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200호서식]

중 대 범 죄 수 사 청

제 호 . . .

수 신:

제 목: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

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귀 기관에서 인지통보한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의 회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대상 사건	접수번호	
	죄명	
	피(혐)의자	*○○○외 ○명*
	인지통보(서면) 접수일	
연장 기한		
연장 사유		
비고		

중대범죄수사청장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